

독촉장

발행번호		발행일
사 업 장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
	주 소	
위반행위의 종류		
과징금		원
지정수납기관		
납부기한		
공지사항		위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

귀하는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독촉하오니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

직인